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 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 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제96조의2, 2023. 1. 19.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나.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지정토록 하되, 인력 부족 등 지정 곤란 시 외부에 위탁도 가능(안 제5조)
- 다. 조종사·관제사는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건강증진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라. 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및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23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